제 60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4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07월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최**	최** 1952-08-24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45번길	재등록
정**	전** 2002-02-07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재등록
정**	정** 1971-02-28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재등록
조**	조** 1972-08-19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	재등록
남**	남** 1976-02-09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	재등록
이**	이** 1978-12-18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	재등록
박**	박** 1986-01-09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지은영 문의전화 : 032-560-4617)

2016년 07월 04일

검단4동장 인